

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- 39호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4월 10일

창원시 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최근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언어·문화 차이로 인한 학업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, 심리·정서적 불안, 진로 선택의 한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창원시 내 이주 배경 아동·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“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2조)
- 나.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.(안 제5조)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범위에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함.(안 제7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(전화:055-225-5373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cost403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전홍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의 원 : 전홍표 · 김상현 · 김이근 · 박선애 · 서영권
이원주 · 이천수 · 정길상 · 홍용채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언어·문화 차이로 인한 학업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, 심리·정서적 불안, 진로 선택의 한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창원시 내 이주 배경 아동·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“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2조)
- 나.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.(안 제5조)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범위에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”이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
나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

제5조의 제목 “(지원계획 수립)”을 “(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매년”을 “창원시”로, “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”를 “매년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지원

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또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
10.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사회·문화 적응, 진로 역량 강화 또는 취업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”이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</p> <p>나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</p>
<p>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</p>	<p>제5조(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</p> <p>① --- 창원시 ----- 매년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해야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

가. ~ 마. (생략)

<신설>

3. ~ 7. (생략)

③ (생략)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(생략)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8. (생략)

9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지원, 한국어 언어능력, 교육프로그램 지원

10. 중도입국자녀의 사회·문화 적응 지원

11. ~ 13. (생략)

③ (생략)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지원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또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

10.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사회·문화 적응, 진로 역량 강화 또는 취업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

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■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18조(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
2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

■ 아동복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■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■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2.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3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

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■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주민”이란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.

2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3.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4. 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”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)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

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
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
가.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

나. 결혼이민자등의 사회·경제적 자립 지원

다.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

라.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

마.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

3.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·홍보

4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

5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
2.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3.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
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5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사업
6.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사업(취학 전 학습 지원,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)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
3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·지원
6.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
7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·번역 서비스의 제공
8.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
9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지원, 한국어 언어능력, 교육프로그램 지원
10. 중도입국자녀의 사회·문화 적응 지원
11. 결혼이민자(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)의 고향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에 드는 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
12.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 시험 교육 지원
1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

할 수 있다.

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

제8조(협의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소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(외국인주민)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교육청, 경찰서,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, 창원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
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3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다문화(외국인주민)지원업무 팀장이 된다.

제9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3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
4.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장)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의 수당) 협의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5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6. 협의회는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7.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

제15조(시책사업 추진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

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 삭제

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다문화주간)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창원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,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

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
3. 명예시민증 수여, 유공자·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) 격려

4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,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0조(포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·단체,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창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1조(명예시민)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
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다.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